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22.9.14.시행)」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교육생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과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 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해당 고시에 따르면, 총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50%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 중 실습교육시간의 30%(234시간) 범위 이내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 교육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 여부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됩니다.
 - 다. 위와 같은 사항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라. 아울러, 국가시험일 이후에 실습교육 과정을 전부 편성·이수하는 것은 의료법 제80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추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시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불가' 판정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22.9.14.시행).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사)전국간호학원협회, (사)한국간호학원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부장관

주무관 **최우영** 보건사무관 **신지연** 간호정책과장 전결 2022.9.14.
양정석

협조자

시행 간호정책과-1883 (2022. 9. 1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6층 간호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93 팩스번호 044-202-3988 / chldndud@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